

보도시점 2024. 11. 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11. 4.(월)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신규 차량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11월 6일)
- 공공부문이 보유한 6만여대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하여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 (‘25.1.1 ~ ’25.12.31) 1.5대 → (’26.1.1 이후) 1대

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나타났다.

* 국가기관 : 50개, 지방자치단체 : 262개, 공공기관 : 454개('23년 기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 대상에 이륜차 포함됨에 따라 실적 산정 기준 마련 필요
-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구매·임차되는 승용·승합·화물차의 무공해차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 주요내용

< 무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구 분	'24.12.31까지	'25.1.1 ~ '25.12.31	'26.1.1 이후
전기이륜차	-	1.5	1.0
전기승용차	1.5	1.0	1.0
전기승합/화물차	1.7		
수소승용차	2.0	1.5	
수소승합차/화물차	2.5	1.7	

- (이륜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대상에 신규로 포함, 환산비율은 '26년부터 1대 구매·임차 시 1대로 인정토록 단계적 강화
- (승용/승합/화물차) 전기차는 '25년부터, 수소차는 '26년부터 1대 구매·임차 시 1대로 인정토록 단계적 강화
- (제외차종) 승합차*(경·소·중형)는 차량 출시 계획 등을 고려 '25년까지 연장, 긴급차량은 상시출동 필요성 등 감안하여 '27년까지 연장

* (경형) 최고출력이 80킬로 와트 미만이고, 길이(3.6m)·너비(1.6m)·높이(2.0m)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4.7m)·너비(1.7m)·높이(2.0m) 이하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